

#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영 주 시

## 영주시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3
----------	-----

제출년월일 : 2006. 2.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 1. 제안이유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에 있어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지매입에 관한 업무를 시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자기대에 부응하는 맞춤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부지매입업무 대행 대상(안 제28조제2항)

- 대규모 민자유치사업 시행자가 영주시에 토지매입 등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요청할 경우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여 대행

#### 나. 업무대행협약 체결(안 제28조제3항)

- 업무대행 범위와 소요경비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대행업무의 내용과 대행경비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다. 업무대행 수수료(안 제28조제4항)

- 업무대행 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되, 규칙이 정하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수수료 면제를 심의·의결한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3. 자치법규안 : 복임

**4. 신·구 대비표 : 붙임**

**5. 입법예고**

- 기 간 : 2005. 12. 19 ~ 2006. 1. 9(21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6. 참고사항 : 붙임**

- 기 시행중인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부지매입업무 대행관련)
- 관련 법규 발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영주시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에 관한 업무대행을 요청할 경우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대행업무의 범위와 업무대행 시 소요되는 경비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대행 업무의 내용과 대행경비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할 경우 대행 수수료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4항 별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규칙이 정하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수수료 면제를 심의·의결한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신·구 대비표

현 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28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15조 및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대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 ..... ..... .....	대규모 면제 이 소요되는 투자사업 유치 를 위하여 투자자 기대 에 부응하는 맞춤식 인센 티브를 제공 하기 위함
<u>&lt;신 설&gt;</u>	<u>②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에 관한 업무대행을 요청할 경우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대행할 수 있다.</u>	
<u>&lt;신 설&gt;</u>	<u>③시장은 제2항의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대행업무의 범위와 업무대행 시 소요되는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대행업무의 내용과 대행경비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u>&lt;신 설&gt;</u>	<u>④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할 경우 대행수수료는 「공의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항 별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규칙이 정하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수수료 면제를 심의·의결한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u>	

## 자치단체의 민자유치사업 인센티브 사례

(골프장 조성사업 세부 협약서 중심)

창녕군	고성군	함양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의 입안 및 승인(사업시행자가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지정 신청)</li> <li>○ 골프장조성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민원해결</li> <li>○ 골프장조성사업 추진위원회 구성(21명)</li> <li>○ 골프장조성사업 면적에 포함된 민간소유 토지(물건 및 권리포함) 수탁 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 적용</li> <li>• 수수료 : 미정(협의)</li> </ul> </li> <li>○ 진입도로 500m 개설 지원(국도에서 골프장 경계까지)</li> <li>○ 토지매매 동의서 징구(8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OC부문에 지원 협조</li> <li>○ 골프장조성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민원해결 협조</li> <li>○ 담당 및 전담공무원 배치</li> <li>○ 골프장조성사업 추진위원회 구성(25명)</li> <li>○ 골프장조성사업 면적에 포함된 민간소유 토지(물건 및 권리포함) 위탁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 적용</li> <li>• 수수료 : 미정(협의)</li> </ul> </li> <li>○ 토지매매 동의서 징구(8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촉진지구사업(골프장, 스키장)의 입안 및 승인(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li> <li>○ 디곡리조트조성사업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민원해결</li> <li>○ 사업전담팀 및 공무원 배치</li> <li>○ 범 군민적 유치위원회 구성(700명)</li> <li>○ 골프장조성사업 면적에 포함된 민간소유 토지(물건 및 권리포함) 매입업무 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 :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접수 확인 후 사업자에게 통지</li> <li>- 사업자 : 군에서 통지한 내역에 따라 보상금 지급 및 이전 등기</li> </ul> </li> <li>• 기준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li> <li>• 수수료 : 보상총액의 0.2%를 수용비로 입금</li> <li>○ 사업장 연접지까지 도로, 상하수도,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지원</li> <li>○ 사업장 부지 공용매도의향조사(85%)</li> </ul>

## □ 관련 법규 발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5.5.31>

1.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 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
5. "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이 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1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생략>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등 주무관청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평가시 우대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사회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제20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 ② <생략>

③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한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이주대책사업등의 시행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관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주무관청 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내용 및 조건과 위탁수수료율 등에 관하여 주무관청 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공익사업"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 이 법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임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3.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의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05.3.31>

7.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제81조 (보상업무 등의 위탁) ①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법 제81조제1항 각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3.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관련사항의 조사
4.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5. 토지조사 및 물건조사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6.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밖의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7. 영업·농업·어업 및 광업손실에 관한 조사
8.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를 제외한다)
9.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10. 보상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업무
11. 토지등의 등기관련 업무
12. 이주대책의 수립·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13.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③ <생략>

④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 각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때에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호의 업무중 일부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사업시행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제4항의 경우 평가수수료·측량수수료·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가 아닌 특별한 비용을 보상전문기관이 지출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와는 별도로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조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계획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내에서의 주변토지개발권 부여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2. "도시계획사업시행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구역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외의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제96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①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 3<생략>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제4조 (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남골시설